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4다3512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서울 중구 ○○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피고, 상고인 1. 최○○  
대구 북구 ○○  
2. 최○○  
경남 거창읍 ○○  
3. 김○○  
경남 함양군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득환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04. 6. 9. 선고 2003나16847 판결  
판 결 선 고 2004. 9.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인 정○○이 피고 최○○과 사이에 판시 26세이상한정운전특약이 있는 제1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최○○에게 피고 최○○ 등 26세 이상의 자가 판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확인함과 아울러 26세 이상한정운전특약이 있는 사정과 26세이상한정운전특약을 하게 되면 만 26세 미만의 자가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최○○이 2000. 1. 25.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0. 1. 25. 24:00부터 2001. 1. 25. 24:00까지로 하되 26세이상한정운전특약을 포함하는 제1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제1보험계약에는 자동갱신특약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특약에 의하면, 갱신계약은 갱신계약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당초 보험계약(이 사건 경우 제1보험계약이다)의 만료일에 체결된 것으로 보고, 갱신계약의 조건은 당초 보험계약의 만

료일 현재 유효한 계약조건과 동일한 것으로 하되 보험계약자가 당초 보험계약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계약 내용의 변경을 통지한 때에는 그에 따르며, 보험계약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당초 보험계약의 만료일 이후 도래하는 약정이체일까지 자동이체 납입하여야 하고, 약정이체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보험계약의 만료일로부터 30일간의 납입유예기간을 두기로 되어 있는 사실, 제1보험계약의 계약자인 피고 최○○은 그 보험기간의 만료일인 2001. 1. 25.을 기준으로 30일전까지 갱신계약 내용의 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2001. 1.경(약정이체일로 보인다)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자동이체 납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제1보험계약의 자동갱신평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 최○○ 사이에 2001. 1. 25.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1. 1. 25. 24:00부터 2002. 1. 25. 24:00까지로 하되 26세이상한정운전특약을 포함한 나머지 계약조건은 제1보험계약과 동일한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인데, 정○○이 제1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 최○○에게 26세이상한정운전특약이 포함된 사정 및 그 특약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최○○에게 제1보험계약의 자동갱신평약에 따라 자동갱신 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26세이상한정운전특약에 관하여 또 다시 설명을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피고 최○○에게 26세이상한정운전특약의 내용을 알려 주지 아니한 원고는 약관상 명시·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윤재식 \_\_\_\_\_

                  대법관      이용우 \_\_\_\_\_

주   심      대법관      이규홍 \_\_\_\_\_

                  대법관      김영란 \_\_\_\_\_